# 화학물질의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 기술지침

2017. 10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용 훈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미 주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미 주

#### ○ 제정 경과

- 2015년 11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6년 11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17년 9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OECD Guideline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(TG 416, Two-Generation Reproduction Toxicity)(2001)
- 관련법규, 규칙, 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-74호(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)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19호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 료에 관한 기준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7년 10월 24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# 화학물질의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 시험 기술지침

##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, 화학물질의 유해성· 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(고시 제2015-74호)에 따라, 화학물질 취급 및 노출 에 의한 독성 및 건강장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 시험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, 제40조(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)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-74호(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)에 의거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에 관한 독성시험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생식능(Reproduction ability)"이란 수컷 또는 암컷이 교미를 하여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.
  - (나) "모동물(Parental generation, P)"이란 생식독성시험에서 자손을 생산하는 수컷 또는 암컷의 부모세대를 지칭한다.
  - (다) "차산자(First finial generation, F1)"이란 모동물(P)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해서 생산한 자손을 말한다.
  - (라) "차차산자(Second finial generation, F2)"이란 차산자(F1)의 수컷과 암컷 이 교미를 해서 생산한 자손을 말한다.

- (마) "우수실험실 운영규정(Good Laboratory Practice, 이하 "GLP"라 한다)"란 의약품,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 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, 실험시설·장비,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,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4. 시험의 준비

#### 4.1 시험동물

#### 4.1.1 동물종

- (1) 랫드 또는 마우스 와 같은 설치류 중 1종을 선택한다.
- (2) 계통 및 품종의 선택은 동물종, 계통 또는 품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수태 능력, 자연발생기형의 발생빈도, 기타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감수성 등을 고려한다.

#### 4.1.2 동물 수

부검 시점에 임신된 암컷 개체의 수가 각 용량군 마다 20마리 이상이 되도록 한다. 이때 모체 사망률은 10%를 넘지 않아야 한다. 특히 임신된 암컷 개체가 16마리 이하이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암컷 동물 수는 충분하여야 한다.

#### 4.1.3 사육조건

- (1) 실험동물은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사육한다.
- (2)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공간의 온도는 22±3℃가 되도록 한다.
- (3) 상대습도는 50~60%를 유지해야하며, 30~70%를 넘지 않아야 한다.

## KOSHA GUIDE

T - 21 - 2017

- (4) 개별 케이지 사용이 이상적이다. 그러나 동물의 수가 적을 경우 집단 케이지 사용도 가능하다.
- (5) 케이지는 배치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배열되어 야한다.
- (6) 음용수는 자유급이로 공급하여야 하며, 일반 실험실용 사료를 공급한다.
- (7) 조명주기는 12시간 간격으로 조절한다.

#### 5. 시험방법

#### 5.1 원리

동물의 암수에 시험물질을 수컷에게는 적어도 1 회의 정자형성기간 동안 암 컷에게는 2 회 이상의 발정주기 동안 투여하고 암수를 교미시켜 임신기간 및 수유기동안 계속 시험물질을 투여하여 시험물질의 생식능 및 후세대에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.

#### 5.2 시험물질

#### 5.2.1 투여방법

경구투여를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필요시 흡입노출, 피부노출을 할 수 있다.

#### 5.2.2 용량

용량・반응 관계를 알고, 최대 무작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, 원칙적으로 3단계 이상 용량의 시험군을 설정한다. 최고용량은 모동물(P)에서 섭이량의 저하나 체중증가의 억제 등 약간의 독성증상을 나타내지만 10%이상의 사망까지는가지 않는 양으로 한다. 1,000 mg/kg에서 독성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그양을 최고용량으로 한다. 최저용량은 태자의 발생에 독성영향이 나타나지 않

는 양으로 한다. 대조군은 별도로 둔다. 부형제가 사용되면 대조군에도 투여를 해야한다.

#### 5.2.3 교배와 시험투여

- (1) 모동물(P) 수컷에는 5~9주령 일때부터 시험물질을 투여하는 데 교미전 10 주간(마우스는 8주간)이상 시험물질을 매일 투여한 후 교배를 시킨다. 모동물(P) 암컷동물에는 적어도 교배전까지 2주간 계속 투여하고 다시 3주간의 교배 및 임신기간, 그리고 제1세대, 즉 차산자(F1)의 이유시까지 매일 투여한다. 암수의 동거기간은 2~3주간 정도로 하는데 그동안 매일 교미의 유무를 확인한다.
- (2) 교미가 확인된 암컷은 분리사육하고 자연분만시켜 차산자(F1)를 얻는다. 한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들의 수를 조정할 때에는, 출생 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새끼들의 암수 숫자를 동일하게 일정한 마리수를 무작위로 남긴다.
  - (3) 차산자(F1)을 이유시키는 단계에서 차세대를 얻기 위한 동물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부검한다. 차세대를 얻기 위한 동물에는, 이유 후 모동물(P) 수컷과 마찬가지로 시험물질을 10주간(마우스에서는 8주간) 이상 투여한후, 원칙적으로는 각각 다른 어미에서 태어난 암수끼리 20쌍 이상을 만들어양친동물과 마찬가지로 교배시켜 제2세대, 즉 차차산자(F2)를 얻는다. 차차산자(F2)는 원칙적으로 이유 후 성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시험물질을 투여하고 사육한다.

#### 5.3 관찰 및 측정사항

#### 5.3.1 모동물(P)

- (1) 일반상태 및 사망의 유무를 관찰하고, 체중 및 사료섭취량을 측정하고, 시험 물질 섭취량을 산출한다.
- (2) 모동물(P)의 수컷에 대해서는 교미율 및 수태율을 산출한다. 또 모동물(P)의 암컷에 대해서는 분만의 이상 유무를 검색하고 출산율을 산출한다.

- 가) 교미율 = (교미동물수/동거동물수) × 100
- 나) 수태율 = (임신동물수/교미동물수) × 100
- 다) 출산율 = (출산어미수/임신어미수) × 100
- (3) 차산자(F1) 이유시에 어미는 부검하고, 내부기관을 관찰한다.
- (4) 차산자(F1)의 수컷, 그리고 교미, 임신, 출산을 하지 않은 암컷은 적절한 시기에 안락사하여 내부기관을 관찰한다. 수컷은 보통 교배기간이 끝났을 때안락사한다. 암컷에 대해서는 교미가 되지 않은 것은 교배기간이 끝났을 때, 또 임신이나 출산이 안된 것은 교미일부터 계산해서 출산예정일을 2, 3일 경과한 때에 안락사한다.

#### 5.3.2 차산자(F1)

- (1) 태어난 차산자(F1)에 대해서는 출생 새끼수, 생사확인, 성별, 체중 및 외관의 변화 등을 조사한다.
- (2) 출생 후는 일반상태, 사망의 유무, 성장 및 형태와 기능의 발달을 관찰 한다. 적어도 주 1 회 체중을 측정한다. 적당한 시기마다 생존율을 산출하고 이유 시에 이유율을 산출한다.
  - 가) 생존율 = (검사시의 생존새끼수/출산시의 새끼수, 생후 4일 또는 도태 직후의 생존 새끼수 또는 이유시의 생존새끼수)×100. 검색의 시기에 따라 분모가 다르다.
  - 나) 이유율 = (이유시 생존새끼수/생 후 4일 또는 도태 직후의 생존새끼수) ×100
- (3) 차차산자(F2)를 얻기 위한 교배용의 차산자(F1)에 대해서는 모동물(P)와 마 찬가지의 검색을 하며, 나머지 차산자(F1)은 이유시에 부검한다.

#### 5.3.3 차차산자(F2)

차산자(F1)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찰을 하며, 원칙적으로 성 성숙기에 부검한다. 필요에 따라 조직학적 검사 또는 혈청 생화학적 검사를 한다. 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하는 장기는 다음과 같다.

- 모동물의 난소, 자궁, 경부, 질, 고환, 부고환, 정낭, 전립선, 응고선, 뇌하수체, 시험물질 영향이 관찰된 장기

#### 5.4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시험 중 사망한 동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사인을 조사한다. 또 일반상태가 극히 불량하게 되어 죽음이 임박한 동물은 신속하게 희생·부검한다.

#### 6. 시험결과 및 보고

#### 6.1 결과의 처리

- (1) 관찰된 이상상태나 독성증상과 시험물질의 투여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계학적 수법을 이용하여 고찰하고, 최대무영향용량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. 이때, 한배에서 나온 새끼들을 표본단위로 한다.
- (2) 시험 결과는 우수비임상실험실(GLP)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최종보고서를 첨부한다. 또한,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적당한 통계적 수법을 이용하여 처리한다.

#### 6.2 시험 결과의 보고

시험보고서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.

- (1)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
- (2)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 성명
- (3) 시험동물: 종, 계통, 체중, 주령, 및 사용수
- (4) 선택용량에 대한 이론적 설명
- (5) 시험물질의 화학물질명 (IUPAC 또는 CAS번호), 물리적 특성, 안정성, 균실성, 적정성, 최종농도

- (6) 시험물질 투여방법
- (7) 시험물질투여에 따른 독성반응자료
- (8) 각 시험동물의 이상증후를 발견한 시간 및 이상증후
  - 가) 실험기간동안 사망 일자
  - 나) 비정상적 임상소견이 발견된 일자
- (9) 사료 및 체중관련자료
- (10) 각 동복 태아의 체중, 신생자의 평균체중 및 종료 시 신생자 개별 체중표
- (11) 모동물(P) 체중의 성적
- (12) 부검 및 조직병리학적 소견